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양 동 욱 국 혜 윤 백 현 경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과 음주량에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가해자 처벌,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책임비율이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88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옷차림 종류에 따른 노출과 선정성, 음주량 수준에 따른 취한 정도, 그리고 성폭력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 94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무선 할당하여 친근자 강간에 대한 책임 귀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한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또 남녀 모두 피해 여성 옷차림의 노출이 증가할수록,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옷차림과 음주를 성적인 의도로 오인하는 성적 이중 기준이 존재함을 암시해준다.

주요어 :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옷차림, 음주량, 피해자 비난

[†] 교신저자 : 윤가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Tel : 062-530-2655, E-mail : ghyoun@chonnam.ac.kr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이며, 이는 가해자의 힘, 통제, 지배 및 성적 충족의 일환이다(Muehlenhard & Linton, 1987). 그렇다면 성폭력의 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를 맹비난한다(백미순, 2012). 하지만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는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성폭력의 책임을 묻는다. 즉, 피해자인 여성이 성폭력을 유발했거나 피해를 당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김은지, 박지선, 2011).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아는 사이이거나 더 나아가 사귀는 사이인지, 도발적으로 보이는 옷차림이나 화장을 하고 있었는지, 술에 취해 있었는지, 밤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가해자의 강압적인 성적 접근에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 등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한다(Maurer & Robinson, 2008).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또는 비난을 다룬 연구는 서구사회의 경우 남성중심에서 양성평등의 사회구조로 탈바꿈한 1970년대부터 근래까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성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서들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옷차림과 음주 수준을 제시하면서 관찰자의 성별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가 달라지는가를 평가하는 것들이었다(Maurer & Robinson, 2008; Sims, Noel, & Maisto, 2007).

예를 들면, Richardson과 Campbell(1982)은 대학생들에게 성폭력 가해자(남성)와 피해자(여성)의 음주 상태를 조작한 데이트 강간 시나

리오를 제시했다. 참가자는 남성만 술에 취했거나, 여성만 술에 취했거나, 남녀 모두 술에 취했거나 혹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포함된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읽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참가자는 술에 취한 남성을 취하지 않은 남성보다 덜 비난하면서 성폭력의 상황(예, 술) 탓으로 원인을 돌렸다. 그 반면, 술에 취한 여성은 취하지 않은 여성보다 더 비난받았는데, 참가자는 술에 취한 여성의 성격 특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술에 취한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강간의 책임이 감소한 반면, 술에 취한 여성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책임이 더 커졌다(Norris & Cubbins, 1992). 그 이후 반복적으로 시도된 유사 연구들에서도 참가자는 술에 취한 남성에게 비난의 수위를 낮추고 술에 취한 여성에게는 가혹한 비난을 하는 성적 이중 기준을 보였다(Cameron & Stritzke, 2003; Stormo, Lang, & Stritzke, 1997).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은 피해자의 옷차림에서도 나타났다(Edmonds & Cahoon, 1986; Lewis & Johnson, 1989; Whately, 2005; Workman & Freeburg, 1999; Workman & Orr, 1996). 예를 들면, 대학생들에게 피해 여성의 옷차림을 ‘긴치마’, ‘무릎길이 치마’, 혹은 ‘짧은 치마’로 조작한 사진을 포함한 데이트 강간 시나리오를 보여 주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평가한 결과, 남녀 참가자 모두 시나리오 속 피해자가 긴치마나 무릎길이 치마를 입었을 때보다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Workman & Freeburg, 1999). 또 대학생들에게 남녀의 옷차림을 ‘중립’, ‘노출’, ‘선정적’으로, 음주량을 ‘둘 다 절주’, ‘남성만 취한 상태’, ‘여성만 취

한 상태’, ‘남녀 모두 취한 상태’로 조작한 데이트 강간 시나리오를 보여 주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얼마나 원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참가자는 남성의 옷차림이나 음주량에는 상관없었지만, 선정적인 옷을 입은 여성이 술에 취할 경우 성관계를 원한다고 해석했으며 또 성폭력 발생에 대한 책임도 더 크다고 했다(Maure & Robinson, 2008).

관찰자의 성별 역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 연구에서는 남성 관찰자가 여성 관찰자보다 피해 여성의 성적 의도를 더 높게 평가했으며,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더 전가하였다(Maurer & Robinson, 2008).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피해자 비난의 성차가 없거나(Cassidy & Hurrell, 1995; Yarmey, 1985) 또는 오히려 여성 관찰자가 남성 관찰자보다 피해 여성을 더 비난하는 결과도 있었다(Cameron & Stritzke, 2003).

그렇다면 성폭력 발생의 책임 일부를 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일까? 피해자 폄하 이론(victim precipitation theory)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관찰자들은 여성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느 장소를 걷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녀 스스로 성폭력을 당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석한다(Carroll, 2009). 또 이 세상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은 설사 그것이 불행한 일이라도 발생할만한 공평한 근거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공평한 세상 가설(just-world hypothesis)이 작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관찰자들은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거나 당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

은 성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해자의 변명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관찰자들 역시 가해자의 변명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윤가현, 2006; Lerner & Miller, 1978).

성폭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평등한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 관계(예, 성별)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화된 폭력이다(이재경, 조영미, 민가영, 박홍주, 이박혜경, 이은아, 2007). 그 구조화된 폭력 속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성폭력 가해자가 너와 나의 상호성을 무시하고 폭력이나 강제, 억압이나 위력, 위계 등으로 상대의 신체를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마치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믿거나 상대가 유혹해서 발생한 행위였다고 몰아간다(나일등, 2012). 또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그런 여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성폭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여성들에게 심어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표한 2011년도 성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아는 사람(즉, 친근자)에 의한 성폭력이 85.1%였으며 또 성인의 피해 비율이 61.1%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도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워 기소가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이 낮다(백미순, 2012). 그 이유는 성범죄 사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판단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 중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허선주, 조은경, 2012). 특히 성인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와 관련된 증거(예,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과거 성경험 등)가 법정에서 제출되기도 한다. 결국, 가해자의 성적 분출은 설사 그것이 폭력적이었을지라도 ‘자연’, ‘본능’으로 해석되기도 한

반면, 피해 여성은 성폭력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의 1차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체계 및 주변 환경에 의해 또다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재경 등, 2007; 허선주, 조은경, 2012; Weller, 1992).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성인 간 친근자 강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행동 단서가 성폭력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폭력 발생의 책임이나 귀인을 다룬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데,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를 살펴본 연구(윤병해, 고재홍, 2006), 강간통념 수용도에 따라서 성행동이나 성폭력 사건의 지각 정도를 살펴본 연구(이석재, 최상진, 2001), 데이트 강간에 대한 태도의 성차를 살펴본 연구(Lee, Busch, & Kim, 2007)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비교한 연구(김은지, 박지선, 2011)와 피해 여성의 가정생활 성실성 여부가 부부 강간 사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연구(이정원, 김혜숙, 201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인 간 친근자 강간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행동 단서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피해자의 행동 단서로는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였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옷차림이나 음주는 개인적 영역으로 개인의 취향, 사생활 또는 자율성과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전

히 여성에게 성역할에 맞는 행동거지나 의복 예절과 같은 사회 인습적 행동규범을 요구하기도 한다(정옥분, 2012).

관찰자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여성의 옷차림 종류나 음주 수준과 같은 피해자 행동 단서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건의 본질보다는 사회 인습적 행동규범의 잣대로 피해자를 평가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직된 태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면, 실제 성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정신적·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배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옷차림 종류 및 음주 수준의 조작을 위해서 연구 1에서는 옷차림에 대한 노출 및 선정성 정도와 음주량에 따른 술에 취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속 여성의 옷차림과 음주량을 조작하여 여성의 옷차림과 음주량, 그리고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 및 책임의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참가자의 강간통념 수용도나 성차별적 태도가 성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두 변인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였다(윤병해, 고재홍, 2006; 이석재, 최상진, 2001; Abrams, Viki, & Masser, 2003).

본 연구에서는 1) 가해자와 피해자 비난에 성차가 나타나는지, 2) 피해 여성 옷차림의 노출 및 음주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피해자 비난이 높아지는지, 3) 피해 여성 옷차림의 노출 및 음주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해자 처벌의 강도가 낮아지는지, 4) 피해 여성 옷차림의 노출 및 음주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해자의 책

임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피해자의 책임비율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할 것인지를 살펴해보았다.

연구 1: 여성의 옷차림과 음주량, 성폭력 시나리오 탐색

방 법

참가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88명(남 41명, 여 47명)이 연구 1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80세($SD = 2.16$, $Range = 19 \sim 25$)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연령이 더 높았지만(남 22.85세, 여 20.89세; $t = 4.72$, $p < .001$), 연령과 종속측정치 간의 상관은 높지 않았다($r = .00 \sim .17$ 로 모두 $p > .05$ 이었음).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옷차림(9종류), 음주량(11수준), 그리고 성폭력 시나리오(3가지)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 그리고 성폭력 시나리오를 독립변인으로, 옷차림의 노출과 선정성, 음주량에 대한 술에 취한 정도, 그리고 성폭력 시나리오의 성폭력 정도 및 발생 가능성 평가를 종속측정치로 이용하였다.

여성의 옷차림과 노출 및 선정성

여성의 옷차림은 상의를 속블라우스(옷자락

을 치마나 바지에 넣어 입는 옷) 3종(긴소매, 반소매, 민소매) 그리고 하의를 슬림스커트(주름이 없고 통이 좁은 모양의 치마) 3종(무릎길이, 미니-무릎 위 13cm, 초미니-무릎 위 26cm)으로 조작하였다. 상의와 하의를 조합해서 ‘긴소매-무릎’, ‘긴소매-미니’, ‘긴소매-초미니’, ‘반소매-무릎’, ‘반소매-미니’, ‘반소매-초미니’, ‘민소매-무릎’, ‘민소매-미니’, ‘민소매-초미니’¹⁾에 해당하는 총 9종류의 옷차림을 구성하였다.²⁾ 옷차림의 노출 및 선정성 평가를 위해, 9종류의 옷차림 사진을 참가자에게 한 장씩 제시하였다. 참가자는 각 사진을 본 후 노출 정도를 “전혀 심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심하다(7점)”, 그리고 선정성 정도를 “전혀 선정적이지 않다(1점)”에서 “매우 선정적이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여성의 음주량과 술에 취한 정도

술은 대학생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선택하였다(중앙일보, 2012. 3. 20.). 맥주잔(250ml의 용량)에 소주와 맥주를 3:7로 섞어 술잔의 8할 정도를 채운 후 음주량을 0잔부터 10잔까지 총 11수준으로

1) 긴소매블라우스-무릎길이스커트=‘긴소매-무릎’, 긴소매블라우스-미니스커트=‘긴소매-미니’, 긴소매블라우스-초미니스커트=‘긴소매-초미니’, 반소매블라우스-무릎길이스커트=‘반소매-무릎’, 반소매블라우스-미니스커트= ‘반소매-미니’, 반소매블라우스-초미니스커트=‘반소매-초미니’, 민소매블라우스-무릎길이스커트=‘민소매-무릎’, 민소매블라우스-미니스커트=‘민소매-미니’, 민소매블라우스-초미니스커트=‘민소매-초미니’라고 칭함.

2)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자발적으로 실험 보조자로 참여한 여대생에게 9종류의 옷차림을 하게 한 후 각 조건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학생의 신장은 164cm이었다. 참가자들에게 옷차림 사진을 제시할 때 사진 속의 얼굴을 회색 원으로 가려서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실험 보조자의 동의를 얻어 옷차림 사진을 부록에 첨부하였다(부록 1).

변화시켰다. 술집 탁자에 소맥이 채워진 잔과 술병을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했으며, 0잔은 빈 잔을 촬영해서 사진 파일에 'X' 표시를 하였다(부록 2).

여성의 음주량에 따른 술에 취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11수준의 음주량 사진을 참가자에게 한 장씩 제시하였다. 참가자는 각 사진을 본 후 취한 정도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1점)”에서 “만취 상태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성폭력 시나리오와 성폭력 정도 및 발생 가능성

대학에서 발생 가능한 성폭력 사건의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학교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선·후배 사이에 발생한 친근자 강간으로 가해자는 남학생, 피해자는 여학생이었다. 시나리오 내용에 강간이란 용어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에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라고 표현하였다. 사례 1은 학교 축제에서, 사례 2는 소개팅 이후, 그리고 사례 3은 동아리 모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상황(축제, 소개팅, 동아리 모임)만 다를 뿐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을 모두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시나리오 분량은 200자 원고 3매를 약간 초과했다(606 ~ 618자). 시나리오 순서를 무작위로 배열한 다음 출력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였다. 참가자는 성폭력 사례의 지각 정도를 성폭력성(이석재, 최상진, 2001)과 대학 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연구절차

대학생 20여 명을 면담하여 대학에서 발생 가능한 성폭력 사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축제, 소개팅, 동아리 모임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 내용은 가해자(남학생)와 피해자(여학생)의 심리 상태보다도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하였다. 대학 내 상담센터와 광주여성민우회의 전문 상담원 2명에게 시나리오 내용이 대학에서 발생 가능한 성폭력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세 시나리오 모두 5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여성의 옷차림은 여름에 맞는 얇은 흰색 블라우스(긴소매, 반소매, 민소매)와 검은색 스커트(무릎길이, 미니, 초미니)를 선택하여 조작하였다. 회색 벽면을 배경으로 여학생에게 9종류의 옷차림을 하게 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한 술집에서 11수준의 음주량을 촬영하였다. 포토샵을 이용하여 사진의 크기와 밝기를 조정하여 다음 파워포인트로 최종 파일을 만들었다.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두 반의 학생에게 ‘옷차림과 음주량 평가에 관한 연구’라고 설명한 다음 9종류의 옷차림 및 11수준의 음주량 사진을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하나씩 제시하였다. 이때 두 반에 제시한 사진의 순서는 다르게 구성하였고, 각 반의 모든 참가자는 동일한 순서로 사진을 본 후 응답지에 노출 및 선정성, 술에 취한 정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또 무작위로 출력하여 제시한 성폭력 시나리오를 읽고 성폭력 정도 및 발생 가능성을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자료수집의 시점이 3월이었지만 참가자에게

9종류의 옷차림을 제시할 때 ‘여름’ 옷차림이라는 것을 상기시켰고, 음주 역시 개인의 주량을 생각하지 말고 ‘여성’일 때 어떠한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 목적이나 배경의 설명 및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결 과

여성의 옷차림에 대한 노출 및 선정성 평가

참가자의 성별과 여성의 옷차림에 따른 노출 및 선정성 점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참

가자의 성별을 집단 간 변인 그리고 여성의 옷차림 상의(3종류)와 하의(3종류)를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한 2 × 3 × 3 ANOVA로 노출 및 선정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노출 평가에서 성별의 효과는 없었고($F < 1$), 상의 효과($F_{2,344} = 207.55, p < .001$)와 성별과 상의 간 상호작용효과($F_{8,688} = 8.53, p < .001$)가 나타났다. 상의 효과의 사후검증 결과, 참가자들은 ‘긴소매’와 ‘반소매’보다 ‘민소매’의 노출을 높게 평가했다. 또 성별과 상의 간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의 결과, ‘반소매’는 남성이 여성보다 ‘민소매’는 여성이 남성보다 노출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하의 효과도 나타났는데($F_{2,344} = 725.34, p < .001$),

표 1. 남녀 참가자가 평가한 여성의 옷차림에 대한 노출과 선정성 점수

		노출			선정성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상의	하의	M (SD)			M (SD)		
긴소매	무릎	1.24 (.43)	1.17 (.38)	1.20 (.40)	1.46 (.71)	1.26 (.64)	1.35 (.67)
	미니	3.32 (1.43)	2.79 (.85)	3.03 (1.18)	2.90 (1.31)	2.53 (1.03)	2.70 (1.18)
	초미니	4.71 (1.28)	4.79 (1.21)	4.75 (1.24)	4.49 (1.53)	4.43 (1.39)	4.45 (1.45)
	소계	3.09 (1.12)	2.92 (1.04)	3.00 (.76)	2.95 (1.36)	2.74 (1.27)	2.84 (.93)
반소매	무릎	1.51 (.84)	1.30 (.58)	1.40 (.72)	1.49 (.77)	1.21 (.54)	1.34 (.67)
	미니	3.05 (1.11)	2.64 (.84)	2.83 (.99)	2.39 (1.13)	2.00 (.90)	2.18 (1.03)
	초미니	4.76 (1.15)	4.49 (1.15)	4.61 (1.15)	4.00 (1.39)	4.06 (1.35)	4.03 (1.36)
	소계	3.11 (1.09)	2.81 (1.02)	2.96 (.75)	2.63 (1.19)	2.43 (1.11)	2.53 (.82)
민소매	무릎	2.80 (1.07)	3.06 (1.13)	2.94 (1.10)	2.20 (1.14)	2.45 (1.08)	2.33 (1.11)
	미니	4.10 (1.09)	4.55 (1.15)	4.34 (1.14)	3.83 (1.49)	3.96 (1.38)	3.90 (1.43)
	초미니	5.61 (.99)	5.79 (.90)	5.70 (.94)	4.73 (1.43)	5.21 (1.26)	4.99 (1.36)
	소계	4.17 (1.27)	4.47 (1.19)	4.32 (.87)	3.59 (1.69)	3.87 (1.58)	3.73 (1.16)

주. 노출(1=전혀 심하지 않다 ~ 7=매우 심하다)과 선정성(1= 전혀 선정적이지 않다 ~ 7=매우 선정적이다) 모두 7점 척도로 측정했음.

사후검증에서 참가자들은 ‘무릎’, ‘미니’, ‘초미니’ 순으로 스커트 길이가 짧아질수록 노출을 높게 평가하였다. 성별과 하의 간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지만($F < 1$), 상의와 하의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_{8,688} = 6.09, p < .001$). 단순 주 효과 분석의 결과, 참가자들은 상의 종류에 상관없이 ‘초미니’ 스커트의 노출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특히 ‘민소매-초미니’ 옷차림의 노출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선정성 평가에서도 역시 성별의 효과는 없었지만($F < 1$), 상의 효과($F_{2,344} = 93.64, p < .001$)와 성별과 상의 간 상호작용효과($F_{2,344} = 4.90, p < .01$)가 나타났다. 상의 효과의 사후검증 결과, 참가자는 ‘반소매’, ‘긴소매’, ‘민소매’ 순으로 소매가 짧아질수록 선정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 성별과 상의 간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의 결과, ‘민소매’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선정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하의 효과 역시 나타났는데($F_{2,344} = 423.15, p < .001$), 사후검증에서 참가자들은 ‘무릎’, ‘미니’, ‘초미니’ 순으로 스커트 길이가 짧아질수록 선정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성별과 하의 간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지만($F_{2,344} = 1.89, p > .05$), 상의와 하의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_{2,344} = 8.79, p < .001$). 단순 주 효과 분석의 결과, 참가자들은 상의 종류에 상관없이 ‘초미니’ 스커트의 선정성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특히 ‘민소매-초미니’ 옷차림의 선정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여성의 음주량에 대한 술에 취한 정도 평가

참가자의 성별을 집단 간 변인 그리고 여성의 음주량(11수준)을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한 2×11 ANOVA로 술에 취한 정도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음주량의 효과가 나타났으나($F_{10,860} = 1029.18, p < .001$), 성별의 효과($F < 1$) 및 성별과 음주량 간 상호작용효과($F < 1$)는 없었다. 음주량 수준과 술에 취한 정도의 경향 분석 결과, 두 변인은 직선형 관계로 참가자들은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술에 취한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F_{10,957} = 507.33, p < .001$).

시나리오의 성폭력 정도 및 발생 가능성 평가

참가자의 성별을 집단 간 변인 그리고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한 2×3 ANOVA로 성폭력 정도 및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성폭력 정도의 평가에서 시나리오의 효과가 나타났으나($F_{2,172} = 10.70, p < .001$), 성별의 효과($F < 1$) 및 성별과 시나리오 간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F < 1$). 시나리오 효과의 사후검증 결과, 동아리 모임($M = 6.40, SD = .08$)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학교 축제($M = 6.16, SD = .10$)와 소개팅($M = 6.10, SD = .10$)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보다 성폭력 정도가 더 높다는 평가만이 의미 있게 드러났다.

성폭력 발생 가능성 평가에서도 역시 시나리오의 효과가 나타났으나($F_{2,172} = 6.27, p < .01$), 성별의 효과($F_{2,172} = 1.42, p > .05$) 및 성별과 시나리오 간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F < 1$). 시나리오 효과의 사후검증 결과, 참가자는 동아리 모임($M = 5.11, SD = .18$)이 소개팅($M = 4.87, SD = .17$)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보다 대학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연구 2: 피해 여성의 옷차림과 음주량에 따른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비난

통념과 양가적 성차별 태도를 조사하였다.

방 법

성폭력 시나리오

참가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네 곳의 대학, 즉 A대(남 195명, 여 189명), B대(남 82명, 여 85명), C대(남 120명, 여 115명) 및 D대(남 82명, 여 76명)의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남학생 479명과 여학생 465명, 총 944명이 연구 2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성별에 따라서 여성의 옷차림(4)과 음주량(4)의 16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었는데, 32가지 조건의 사례 수(n)는 27 ~ 33명 사이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07세($SD = 2.13$, $Range = 19 \sim 2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연령이 더 높았다(남 22.71세, 여 21.41세, $t = 9.80$, $p < .001$). 연령과 종속측정치 간의 일부에서 상관이 높게 나타나 연령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였다(표 2).

연구 1의 참가자는 세 가지 상황의 시나리오에 대해 성폭력 정도 및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 중 참가자가 성폭력 정도($M = 5.40$, $SD = .08$)와 발생 가능성($M = 4.11$, $SD = .18$)을 높게 평가한 ‘동아리 모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연구 2의 시나리오로 선택하였다.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시나리오 속 여성의 옷차림을 4종류로 조작하고 음주량을 4수준으로 변화시킨 것을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옷차림 종류 및 음주량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비난을 종속측정치로 이용하였다. 독립변인의 조작과 무관하게 참가자의 강간통념과 성차별 태도가 종속측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윤병해, 고재홍, 2006; 이석재, 최상진, 2001; Abrams, Viki, & Masser, 2003), 이를 공변인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강간

「대학 1년생인 김○○(여, 20세)은 한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 중이다. 그녀는 수업이 빈 시간에 동아리방에 들르곤 하는데, 그곳에서 한 남성과 몇 번 마주쳤다. 그는 3학년 선배 박△△(남, 23세)로 ○○에게 동아리 활동에 관해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다. 동아리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은 (옷차림)을 입고 학교 근처 약속장소로 갔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한 후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 선배가 “술 한 잔 받아!”라며 ○○에게 소맥(소주와 맥주를 3:7로 섞은 술)을 권했다. ○○은 그가 원하는 (음주량)을 마셨다. 모임이 거의 마무리 되자, △△ 선배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를 동아리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었다.”고 고백했다. ○○가 당황하여 머뭇거리는 순간, 그는 그녀를 소파에 밀어붙이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가 있는 힘껏 그를 밀쳐내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황급히 빠져나오려 했

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거칠게 그녀를 소파에 밀어붙여 꼼짝도 못하게 한 채 그녀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결국 강제로 성행위까지 시도했다.」

여성의 옷차림 종류 및 음주량 수준

연구 1의 참가자는 9종류의 옷차림의 노출 및 선정성 그리고 11수준의 음주량의 취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중 옷차림의 종류에 따라서 노출 및 선정성의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남녀 참가자가 유사하게 평가했던 옷차림 종류를 선택하였다. 노출 및 선정성의 점수 간격을 고려하여 4종류의 옷차림을 연구 2에서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긴소매-무릎’으로 ‘미미한’, 두 번째는 ‘반소매-미니’로 ‘약한’, 세 번째는 ‘민소매-미니’로 ‘웬만한’, 네 번째는 ‘민소매-초미니’로 ‘상당한’ 노출 및 선정성에 해당하였다(표 1).

음주량 수준은 연구 1의 남녀 참가자가 여성의 취한 정도를 유사하게 평가하였기 때문에 음주량 수준에 따라서 취한 정도의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아홉 잔($M = 6.29, SD = 0.10$)과 10잔($M = 6.68, SD = 0.06$)의 평가 점수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여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행동과 어울리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술에 취한 점수의 간격을 고려하여 4수준의 음주량을 선택하여 연구 2에서 사용하였다. 첫 번째 수준은 0잔으로 ‘전혀 취하지 않음’, 두 번째는 3잔으로 ‘약간’, 세 번째는 5잔으로 ‘어느 정도’, 네 번째는 7잔으로 ‘상당히’ 취함에 해당하였다.

시나리오 속 여성의 (옷차림)이라는 문구에는 ‘긴소매블라우스와 무릎길이스커트’, ‘반소매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 ‘민소매블라우스와 초미니

스커트’를 또 (음주량)이라는 문구에는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총 석 잔 마셨다’, ‘총 다섯 잔 마셨다’, 또는 ‘총 일곱 잔 마셨다’의 구절을 삽입했다. 네 종류의 옷차림과 네 수준의 음주량을 조합해서 총 16가지 조건을 설정하였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비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비난은 이석재와 최상진(2001)의 성폭행 사례의 지각과 Viki, Abrams와 Masser(2004)의 강간 책임 척도를 참고하여 가해자 비난 2문항 그리고 이와 동일한 내용의 피해자 비난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가해자 비난을 측정하는 문항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남자의 잘못이다.”와 “이 사건은 남자가 비난받아 마땅하다.”였고, 피해자 비난을 측정하는 문항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여자의 잘못이다.”와 “이 사건은 여자가 비난받아 마땅하다.”였다. 각 문항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 사이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해자 비난과 피해자 비난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α)는 각각 .80과 .81이었으며, 각 2문항의 평균값을 종속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참가자는 “남자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처벌 없음(1점)”에서 “최대한 무거운 처벌(7점)”까지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Klein, Apple과 Kahn(2011)의 성희롱 책임 척도를 참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을 비율로 물었는데, 참가자는 “사건 발생에 대해 남자와 여자에게 몇 대 몇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남자 0%, 여자 100%(1점)”에서 “남자 100%, 여자 0%(11점)” 사이의 11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강간통념 척도

강간통념 수용은 Burt(1980)의 척도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이석재(1999)의 강간통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 문항으로 4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요인 1은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5문항(예,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요인 2는 ‘피해자의 성격함’ 4문항(예,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요인 3은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 조작’ 5문항(예,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동기로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요인 4는 ‘이성 행동에 대한 오해’ 3문항(예,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 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하여야 한다)이다(이석재, 최상진, 2001). 각 문항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α)는 .93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가적 성차별 태도 척도

성차별은 Glick와 Fiske(1996)의 ASI(Ambivalent Sexism Inventory)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안상수, 김혜숙과 안미영(2005)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이루어졌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지배적 남성주의’ 6문항(예, 집의 소유주는 남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쟁적 성역할 분화’ 6문항(예, 요사이 여성의 권익 옹호를 위한 발언은 공평을 넘어서서 지나치다)과 ‘적대적 이성애’ 6문항(예,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러 먹는다)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보호적 남성주의’ 7문항(예, 늦은 밤에는 남자가 여자를 집에까지 바래다주어야 한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 5문항(예,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섬세함을 지니고 있다)과 ‘친밀한 이성애’ 6문항(예,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이다. 각 문항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α)는 적대적 성차별 .90, 온정적 성차별 .89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절차

설문지는 A4용지 4쪽 분량으로 설문지 1쪽 및 2쪽 상단에는 양가적 성차별 태도 척도, 2쪽 하단 및 3쪽에는 성폭력 시나리오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평가, 그리고 4쪽에는 강간통념 척도를 배치하여 인쇄하였다. 성폭력 시나리오가 기재된 2 ~ 3쪽에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음주량의 컬러 사진도 포함했다. A대, B대, C대와 D대의 교양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하였다. 교양수업을 듣는 18개 분반의 학생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라고 안내한 다음, 설문의 주제를 불편하게 느낀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충분히 주지시켰다. 각 분반의 학생 수는 30 ~ 60명 정도였다. ‘옷차림’과 ‘음주량’의 조건(16가지)이 다르게 인쇄된 설문지를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서 무작위로 나누어주었다. 참가자에게 설문 작성 방법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토대로 평가해 달라고 안내하였다. 설문이 끝난 후 곧바로 참가자에게 옆 혹은 앞·뒤의 사람과 설문지 2쪽과 3쪽을 비교해보라고 하였다. 참가자는 자신이 작성한 설문지의 시나리오 속 사진이 다른 참가자가 작성한 설문지의 사진과 다름을 알아차리고 의아해 하였다. 참가자에게 본 연구의 실제 목적은 여성의 옷차림과 음주량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이나 배경의 설명 및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총 25분 정도였다. 조사는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였다. 참가자 중 나이가 35세 이상($n = 5$)이거나 설문을 불성실하게 한 사례($n = 3$)를 제외하고 총 94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참가자의 성별 및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옷차림과 음주량에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난 평가가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참가자의 성별을 구획변인으로 설정하고 참가자를 피해자의 옷차림(4)과 음주량(4)의 16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하는 $2 \times 4 \times 4$ 무선구획설계를 하였다. 참가자의 연령, 강간통념 및 양가적(적대적, 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독립변인의 조작과 무관하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2를 보면 참가자의 연령,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 태도가 가해자 및 피해자의 비난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연령, 강간 통념 및 적대적 성차별 태도를 공변인으로 통제하면서 참가자의 성별 및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옷차림과 음주량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 정도, 가해자 처벌,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MANCOVA를 실시하였다(표 3).

표 2. 측정 변인 간의 상관

	2	3	4	5	6	7	8
1	.15**	.14**	.10**	.06	-.07*	.05	.07*
2	-	.58**	.29**	-.31**	.36**	-.22**	-.31**
3		-	.39**	-.13**	.20**	-.13**	-.15**
4			-	.03	.01	-.00	.00
5				-	-.51**	.42**	.58**
6					-	-.37**	-.65**
7						-	.49**

* $p < .05$, ** $p < .01$

주. 1=연령, 2=강간통념, 3=적대적 성차별, 4=온정적 성차별, 5=가해자 비난, 6=피해자 비난, 7=가해자 처벌, 8=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임.

표 3. 참가자 성별, 피해자의 옷차림 및 음주량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 비난, 처벌 및 책임 비율

독립 변인	종속 변인	SS	df	MS	F
(연령)	가해자 비난	4.08	1	4.08	4.31*
	피해자 비난	10.15	1	10.15	8.29**
	가해자 처벌	4.23	1	4.23	5.71*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	11.05	1	11.05	6.33*
(강간통념)	가해자 비난	96.70	1	96.70	102.37***
	피해자 비난	136.85	1	136.85	111.87***
	가해자 처벌	26.96	1	26.96	36.38***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	162.24	1	162.24	92.94***
(적대적 성차별)	가해자 비난	.01	1	.01	< 1
	피해자 비난	5.83	1	5.83	4.77*
	가해자 처벌	.06	1	.06	< 1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	1.93	1	1.93	1.10
참가자 성별	가해자 비난	17.74	1	17.74	18.78***
	피해자 비난	36.10	1	36.10	29.51***
	가해자 처벌	.09	1	.09	< 1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	36.74	1	36.74	21.05***
옷차림	가해자 비난	31.72	3	10.57	11.19***
	피해자 비난	46.94	3	15.64	12.79***
	가해자 처벌	13.76	3	4.58	6.19***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	77.71	3	25.90	14.84***
음주량	가해자 비난	11.52	3	3.84	4.08**
	피해자 비난	16.15	3	5.38	4.40**
	가해자 처벌	11.55	3	3.85	5.19***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	42.73	3	14.24	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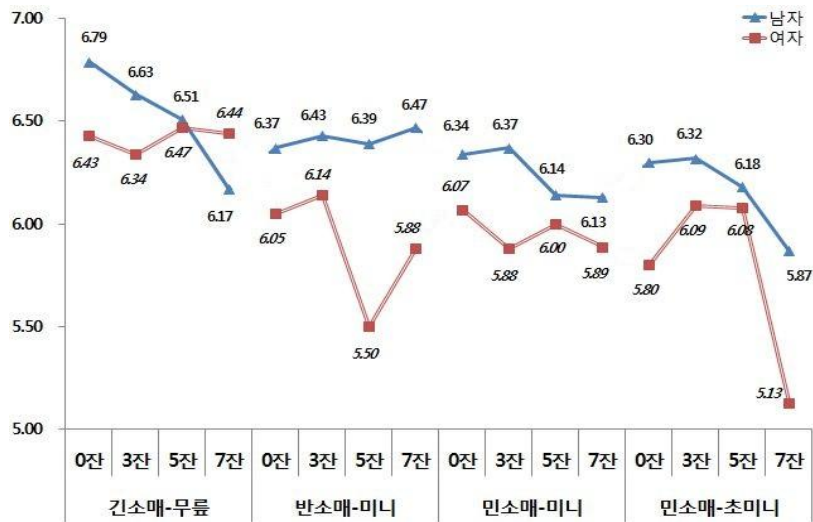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주. 상기는 이원 상호작용 및 삼원 상호작용이 어떤 조건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서 상호작용효과를 생략한 ANOVA model의 분석 결과임.

가해자 비난

공변인으로 통제한 연령($F_{1,909} = 4.31$, $p < .05$)과 강간통념($F_{1,909} = 102.37$, $p < .001$)은 가

해자 비난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성별($F_{1,909} = 18.78$, $p < .001$), 옷차림($F_{3,909} = 11.19$, $p < .001$) 및



주. 각 조건의 수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남자의 잘못이다.”, “이 사건은 남자가 비난받아 마땅하다.”의 2문항의 조정된 평균값임.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함.

그림 1. 참가자의 성별 및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옷차림과 음주량에 따른 성폭력 가해자 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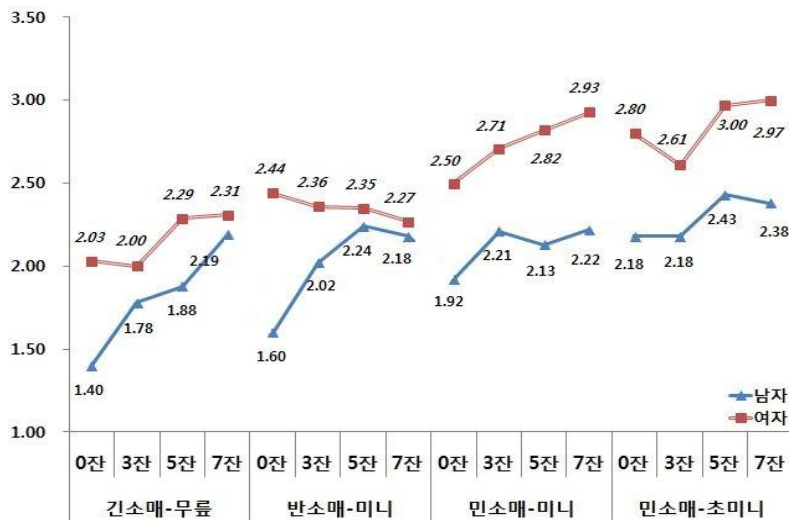
음주량($F_{3,909} = 4.08, p < .01$)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자($M = 6.34, SE = .04$)가 여자($M = 6.01, SE = .05$)보다 가해자를 약간 더 심하게 비난하였다. 옷차림과 음주량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참가자는 피해자의 옷차림이 ‘반소매-미니’($M = 6.15, SE = .06$), ‘민소매-미니’($M = 6.10, SE = .06$) 및 ‘민소매-초미니’($M = 5.97, SE = .06$)일 때보다 ‘긴소매-무릎’($M = 6.47, SE = .06$)일 때 가해자를 약간 더 심하게 비난하였다. 또 피해자가 술을 7잔($M = 6.00, SE = .06$) 마셨을 때보다 전혀($M = 6.27, SE = .06$) 마시지 않거나 3잔($M = 6.28, SE = .06$)을 마셨을 때 가해자를 약간 더 심하게 비난하였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피해자 비난

공변인으로 통제한 연령($F_{1,909} = 8.29, p <$

.01), 강간통념($F_{1,909} = 111.87, p < .001$) 및 적대적 성차별 태도($F_{1,909} = 4.77, p < .05$) 모두 피해자 비난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성별($F_{1,909} = 29.51, p < .001$), 옷차림($F_{3,909} = 12.79, p < .001$) 및 음주량($F_{3,909} = 4.40, p < .01$)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여자($M = 2.52, SE = .05$)가 남자($M = 2.06, SE = .05$)보다 피해자를 약간 더 비난하였다. 옷차림과 음주량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참가자는 피해자의 옷차림이 ‘긴소매-무릎’($M = 1.99, SE = .07$)일 때보다 ‘민소매-미니’($M = 2.43, SE = .07$) 및 ‘민소매-초미니’($M = 2.57, SE = .06$)일 때, 또 ‘반소매-미니’($M = 2.18, SE = .07$)일 때보다 ‘민소매-초미니’일 때 피해자를 약간 더 비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을 때($M = 2.11, SE = .07$)보다 5잔($M = 2.39, SE = .07$)



주. 각 조건의 수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여자의 잘못이다.”, “이 사건은 여자가 비난받아 마땅하다.”의 2문항의 조정된 평균값임.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함.

그림 2. 참가자의 성별 및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옷차림과 음주량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비난

및 7잔($M = 2.43, SE = .07$)을 마셨을 때 피해자를 약간 더 비난하였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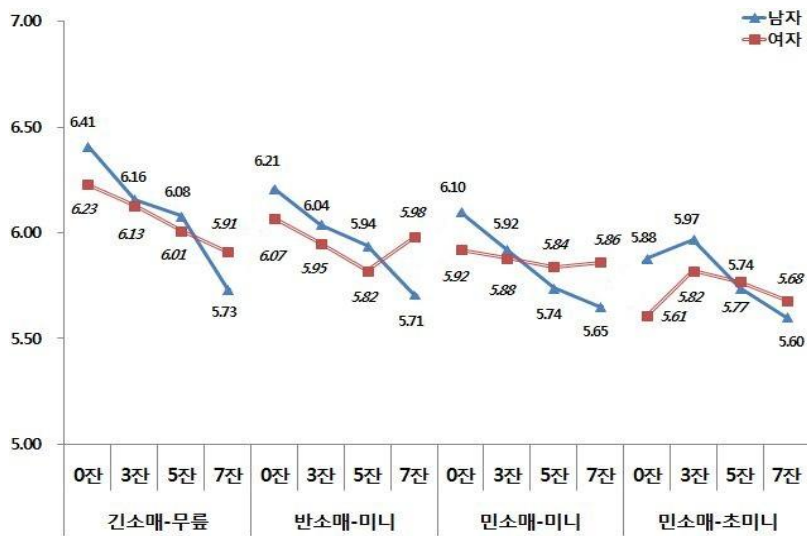
가해자 처벌

공변인으로 통제된 연령($F_{1,909} = 5.71, p < .05$)과 강간통념($F_{1,909} = 36.38, p < .001$)이 가해자 처벌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옷차림($F_{3,909} = 6.19, p < .001$)과 음주량($F_{3,909} = 5.19, p < .001$)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가해자의 처벌을 유사하게 평가하였는데($F > 1$), 옷차림과 음주량의 사후검증 결과, 참가자는 피해자의 옷차림이 ‘긴소매-무릎’($M = 6.08, SE = .05$)일 때보다 ‘민소매-미니’($M = 5.86, SE = .05$) 및 ‘민소매-초미니’($M = 5.76, SE = .05$)일 때 가해자의 처벌을 약간 더 낮게 평가하였다. 또 피해자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을 때($M =$

$6.05, SE = .05$)보다 5잔($M = 5.98, SE = .05$) 및 7잔($M = 5.77, SE = .05$)을 마셨을 때 가해자 처벌을 약간 더 낮게 평가하였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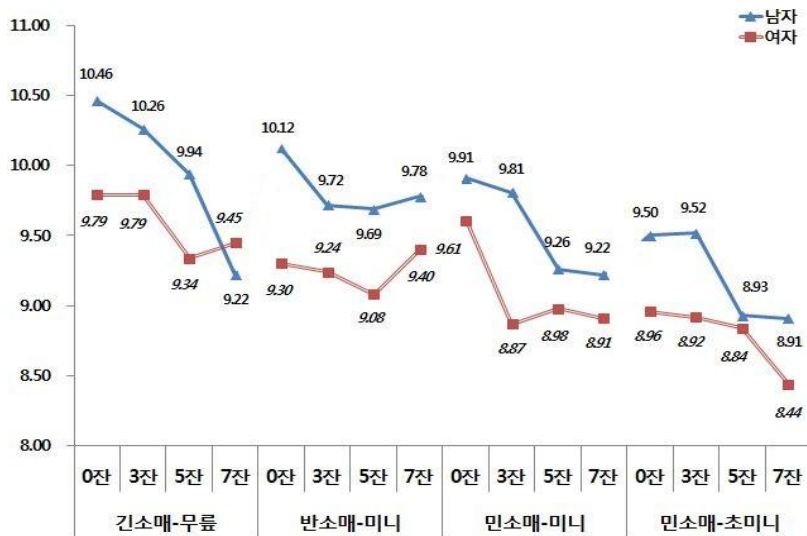
가해자와 피해자 책임비율

공변인으로 통제된 연령($F_{1,909} = 6.33, p < .01$)과 강간통념($F_{1,909} = 92.94, p < .001$)이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성별($F_{1,909} = 21.05, p < .001$), 옷차림($F_{3,909} = 14.84, p < .001$) 및 음주량($F_{3,909} = 8.16, p < .001$)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여자($M = 9.18, SE = .06$)가 남자($M = 9.64, SE = .06$)보다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약간 더 낮게, 피해자의 책임비율을 약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옷차림과 음주량의 사후검증 결과, 참가자는 피해자의 옷차림이 ‘긴소매-무릎’($M = 9.78, SE =$



주. 각 조건의 수치는 가해자 처벌의 조정된 평균임. 가해자 처벌은 7점 척도(1=처벌 없음 ~ 7=최대한 무거운 처벌)로 측정함.

그림 3. 참가자의 성별 및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옷차림과 음주량에 따른 성폭력 가해자 처벌



주. 각 조건의 수치는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의 조정된 평균임.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은 11점 척도(1=남자 0%, 여자 100%, 2=남자 10%, 여자 90%, 3=남자 20%, 여자 80%, 4=남자 30%, 여자 70%, 5=남자 40%, 여자 60%, 6=남자 50%, 여자 50%, 7=남자 60%, 여자 40%, 8=남자 70%, 여자 30%, 9=남자 80%, 여자 20%, 10=남자 90, 여자 10%, 11=남자 100%, 여자 0%)로 측정함.

그림 4. 성별 및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옷차림과 음주량에 따른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

.08)일 때보다 ‘민소매-미니’($M = 9.32, SE = .08$) 및 ‘민소매-초미니’($M = 9.00, SE = .08$)일 때, 또 ‘반소매-미니’($M = 9.54, SE = .08$)일 때보다 ‘민소매-초미니’일 때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약간 더 낮게, 피해자의 책임비율을 약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을 때($M = 9.71, SE = .08$)보다 5잔($M = 9.26, SE = .08$) 및 7잔($M = 9.17, SE = .05$)을 마셨을 때, 또 3잔($M = 9.52, SE = .08$)보다 7잔을 마셨을 때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약간 더 낮게, 피해자의 책임비율을 약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음주량 단서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여성 옷차림의 노출 및 선정성 정도와 음주량에 따른 술에 취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2에서는 가상의 친근자 강간 시나리오를 이용하되, 연구 1에서 얻은 결과를 근거로 여성의 옷차림과 음주량을 각각 4가지 수준으로 조작한 상태에서 참가자들의 강간통념과 성차별적 태도를 공변인으로 통제된 후 가해자와 피해자 비난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여성의 옷차림은 가해자와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참가자들은 피해 여성의 옷차림이 ‘반소매-미니’, ‘민소매-미니’, 그리고 ‘민소매-초미니’일 때보다 ‘긴소매-무릎’일 때 가해자를 약간 더 비난하였다. 그러나 ‘긴소매-무릎’

일 때보다 ‘민소매-미니’와 ‘민소매-초미니’일 때 피해자를 약간 더 비난하고 또 가해자의 처벌을 약간 더 낮게 평가하였으며,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약간 더 낮게 또 피해자의 책임을 약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 여성의 음주량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쳤다. 참가자들은 피해 여성이 소맥을 ‘7잔’ 마셨을 때보다 ‘3잔’이나 ‘0잔’ 마셨을 때 가해자를 약간 더 비난하였다. 그 반면에 참가자들은 피해 여성이 술을 ‘0잔’ 마셨을 때보다 ‘5잔’ 또는 ‘7잔’ 마셨을 때 피해자를 약간 더 비난하고 또 가해자의 처벌을 약간 더 낮게 평가하였으며,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약간 더 낮게 그리고 피해자의 책임을 약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 비난에서 성차가 있었다. 남성 참가자들이 여성 참가자들보다 전반적으로 가해자를 약간 더 비난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참가자들보다 피해자를 약간 더 비난하고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에는 가해자 책임비율을 약간 더 낮게 피해자의 책임비율을 약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넷째, 참가자의 연령과 강간통념은 가해자 비난, 피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 그리고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 평가에 공변인의 효과가 있었다. 특히 적대적 성차별 태도는 피해자 비난에서만 공변인의 효과를 보였다.

피해 여성의 옷차림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난 정도가 달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사람들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성적으로 더 개방적이며 문란할

것으로 생각하며(Workman & Freeburg, 1999), 남성이 성행위를 가질 의도를 갖고 여성에게 접근했을 때 여성의 옷차림은 성교 가능성이나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잘못 추론한다는 것이다(Johnson & Lee, 2000).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여성의 옷차림을 비언어적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여성의 옷차림에 성교 행위의 욕망이 함축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의 성적 접근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이더라도 성폭력의 책임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Workman & Orr, 1996). 다른 측면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여 여성의 노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남성의 성욕을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이나 충동으로 잘못 이해하는데, 여성이 도발적인 옷차림으로 남성의 성욕을 자극했으니 여성에게도 성폭력의 책임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윤가현, 2006).

피해 여성의 음주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해자 비난은 줄어드는 경향을 그리고 피해자 비난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의 알코올 섭취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음주에 대한 이중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다(Maurer & Robinson, 2008). 여성이 과도한 음주로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들은 ‘흐트러진’ 혹은 ‘성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여자’로 바라보며, 그 여성이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오인하기 때문에 성폭력의 발생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 반대로, 남성이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사람들은 그 남성이 처음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나 술에 취해 통제력을 상실한 결과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남성의 잘못된 성행동에 대한 비난 수준이 약화 돼 버린다(George, Gournic, & McAfee,

1988). 결국,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적어지는 반면(예, “그 남자는 술에 만취되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대.”), 술에 취한 여성은 성범죄를 초래한 책임을 지게 된다(예, “그 여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사람들에게 시시덕댔대.”)(Carroll, 2009).

성폭력 시나리오를 이용해 성폭력 책임 귀인은 살펴본 대다수 연구에서 남성 참가자가 여성 참가자보다 피해 여성을 더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여성 참가자가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남성 참가자가 가해자를 더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을 공변인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사실, 강간통념($F_{1,942} = 110.86, p < .001$)과 적대적 성차별($F_{1,942} = 293.47, p < .001$)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며, 가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 및 가해자·피해자 책임비율과는 부적상관을 그리고 피해자 비난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표 2).

이 두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폭력 책임 귀인의 성차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성폭력 책임 귀인, 즉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은 성차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지닌 강간통념이나 적대적 성차별 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남성보다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것은 남성중심 사회의 가치를 여성 자신도 내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교육은 가해자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보다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언제라도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밤늦게 돌아

다니지 않도록,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도록,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친하지 않은 이성과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는 실정이다. 그 결과, 여성 역시 ‘성폭력을 당할 만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구분 짓고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피해자가 그럴만한 행동을 했으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피해 여성의 옷차림과 음주량에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성적 이중 기준을 살펴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리면서도 노출이 있는 옷차림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에게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 인습적 행동규범 잣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추후 더 나은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옷차림이나 음주량의 조작과 관계없이, 참가자 중 일부는 시나리오 속 남성의 강압적인 성적 접근에 대한 여성의 거부 행동을 변변찮은 저항(token resistance)으로 해석하여 피해자를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다(Muchlenhard & Hollabaugh, 1988). 여성의 저항 수준 역시 성폭력 책임 귀인에서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의 저항에 대한 조작이나 명확한 통제가 필요하다. 둘째, 시나리오 속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 남성의 음주량은 언급하지 않고 피해 여성의 옷차림과 음주량을 조작하였다. 실제 성폭력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가 가해자 양형 판단의 고려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를 현행

법원의 판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해 남성의 음주량과 피해 여성의 음주량을 함께 조작하여 성폭력 책임 귀인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책임 귀인을 살펴 보았지만, 연령을 확대해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세대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넷째, 강간통념이 성폭력 책임 귀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강간통념 수용 정도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을 살펴보거나 더 나아가 강간통념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탐색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참고문헌

- 김은지·박지선 (2011).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 171-183.
- 나일등 역 (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 백미순 (2012). 성폭력 관련법의 실태와 효과. *대한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96-110.
- 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39-66.
- 윤가현 (2006).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윤병해·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여성*, 11, 1-19.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

- 131-148.
- 이석재 ·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97-116.
- 이재경 · 조영미 · 민가영 · 박홍주 · 이박혜경 · 이은아 (2011). 여성학. 서울: 미래M&B.
- 이정원 · 김혜숙 (2012).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부부강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47-73.
- 정옥분 (2012).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중앙일보 (2012. 3. 20.). “소주에 이거 타야...” 여대생들 마시는 술 보니.
- 허선주 · 조은경 (2012).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20, 381-415.
- Abrams, D., Viki, G. T., & Masser, B.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11-125.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of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Cameron, C. A., & Stritzke, W. G. (2003). Alcohol and acquaintance rape in Australia: Testing the presupposition model of attributions about responsibility and blam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 983-1008.
- Carroll, J. L. (2009). *Sexuality now: Embracing diversity*. Canada: Cengage Learning.
- Cassidy, L., & Hureel, R. M. (1995). The influence of victim's attire on adolescents' judgments of date rape. *Adolescence*, 30, 319-323.
- Edmonds, E. M., & Cahoon, D. D. (1986). Attitudes concerning crimes related to clothing worn by female victim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4, 444-446.
- George, W. H., Gournic, S. J., & McAfee, M. P. (1988). Perceptions of postdrinking female sexuality: Effects of gender, beverage choice, and drink paymen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1295-1317.
- Glick, P., & Fiske,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Johnson, K. K., & Lee, M. (2000). Effects of clothing and behavior on perceptions concerning an alleged date rap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8, 331-356.
- Klein, K. M., Apple, K. J., & Kahn. (2011). Attributions of blame and responsibility in sexual harassment: Reexamining a psychological mode. *Law and Human Behavior*, 35, 92-103.
- Lee, J., Busch, N. B., & Kim, J. (2007). Attitudes toward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Sex Roles*, 57, 641-649.
- Lerner, M., & Miller, D.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 1030-1051.
- Lewis, L., & Johnson, K. K. (1989). Effect of dress, cosmetics, sex of subject, and causal inference on attribu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 22-27.
- Maurer, T. W., & Robinson, D. W. (2008).

- Effects of attire, alcohol, and gender on perceptions of date rape. *Sex Roles*, 58, 43-434.
- Muehlenhard, C. L., & Hollabaugh, L. (1988). Do women sometimes say no when they mean yes?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women's token resistance to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72-879.
-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86-196.
- Norris, J., & Cubbins, L. A. (1992). Dating, drinking and rape: Effect of victim's and assailant's alcohol consumption on judgments of their behavior and trai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 179-191.
- Richardson, D., & Campbell, J. L. (1982). Alcohol and Rape: The effect of alcohol on attributions of blame for rap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468-479.
- Sims, C. M., Noel, N. E., & Maisto, S. T. (2007). Rape blame as a function of alcohol presence and resistance type. *Addictive Behaviors*, 32, 2766-2775.
- Stormo, K. J., Lang, A. R., & Stritzke, W. G. (1997). Attributions about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alcohol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 279-305.
- Viki, G. T., Abrams, D., & Masser, B. (2004). Evaluation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sexism in perpetrator blame and recommended sentence length. *Law and Human Behavior*, 28, 295-303.
- Weller, S. (1992). Why is date rape so hard to prove? *Health*, 6, 62-65.
- Whatley, M. A. (2005). The effect of participant sex, victim dress, and traditional attitudes on causal judgments for marital rap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 191-200.
- Workman, J. E., & Freeburg, E. W. (1999). An examination of date rape, victim dress, and perceiver variables with the context of attribution theory. *Sex Roles*, 41, 261-277.
- Workman, J. E., & Orr, R. (1996). Clothing, sex of subject, and rape myth acceptance as factors affecting attributions about an incident of acquaintance rap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 276-284.
- Yarmey, A. D. (1985). Older and younger adults'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toward rape victims and rapis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7, 327-338.
- 1 차원고접수 : 2012. 7. 23.
 심사통과접수 : 2012. 8. 31.
 최종원고접수 : 2012. 9. 28.

Differences in Attributing of Blame and Responsibility in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der, Victim's Clothing Styles, and Alcohol Consumption

Dong-ouk Yang

Hey Un Kook

Hyon Kyong Baek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erpetrators and victims in sexual violence were blamed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der, victim's clothing style, and levels of alcohol consumption. In Study 1, the extent of provocativeness for the clothing styles, the intoxication level by drinking alcohol, and the applicability of nonstranger rape scenarios were validated through asking the participants (41 men & 47 women) to evaluate them. In Study 2, the other participants (479 men & 465 women) were randomly assigned into one of four clothing styles and one of four drinking levels to investigate the attributions of blame and responsibility about sexual violence. Participants' age and rape myth, hostile sexism were controlled as covariates in analyzing data. The general findings were that men blamed the perpetrator more than women, while women blamed the victim more than men. In addition, both men and women tended to blame the victim more severely when the victim drank more and put on more provocative clothes. The findings suggest that men and women would stick to the sexual double standard.

Key words : alcohol consumption, blaming victim, clothing styles, perpetrator, victim

부록 1. 피해자의 옷차림



부록 2. 피해자의 음주량

